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19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자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신설(안 제15조의2)
- 다. 그 밖에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조례개정 시 반영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입법예고 : 2025. 3. 20. ~ 4. 8.(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나) 경기도 : 자치행정과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70시간 이상 또는 누적 봉사 4,0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 기타”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과반수 이상으”를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
3. 할인 가맹점 할인제도 운영

② 누적 봉사시간 4,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팀장 직위·성명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유보라(☎226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70시간 이상 또는 누적 봉사 4,0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u>강구하여</u>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u>마련하여</u> ----- -----.</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u>강구하여</u>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 <u>마련하여</u> ----- ----- -----.</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그 밖에</u></p>

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생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다만, 최초 센터장 선임 시에는 직원 채용을 시에서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⑧ (생략)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위원장 회의에 올리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운영에 -----.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그 밖-----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른 -----

----- 과반수-----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17조(보험가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

3. 할인 가맹점 할인제도 운영
② 누적 봉사시간 4,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2. (생략)

3.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에 접수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4.>
3. “자원봉사관리자”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이라 함은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3.]

1. 공공시설 등 이용시 우대
 - 가.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
 - 나.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5.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권고
6.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2.06)
6.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5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이상의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 또는 우수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봉사 2,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17.9.29.)

제20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11.05.)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누적 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4.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 가맹점제도 운영
5.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초청 등 우대
6. 평택시 애향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7. 우수자원봉사자 평택시 홈페이지에 홍보
8.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9. 평택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권고[본조신설 2017.9.29.]

② 시장은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24.11.05.)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건설을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다만, 최초 센터장 선임 시에는 직원 채용을 시에서 공모·선정할 수 있다.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시장은 센터를 법인화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여부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⑧그 밖의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 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 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인정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에 접수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접수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3.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에 접수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인적자원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 증서교부)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접수된 사람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5.9.30)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1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비용
 - 우수봉사자증 발급을 위한 모바일 앱 유지비용 : 연간 1,320천원(월 110,000원 * 12개월)
 -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청구비용 : 연간 6,000천원(1인 최대 600,000원 * 10명)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 이상익 팀장 장영신